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-116호

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: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51조제2항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절차를 마련하고,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재위탁”을 “재계약”으로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제3호 및 제11조제2항)

나. 회계감사 및 감사인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16조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11월 4일

나.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

- 주소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
- FAX : (044) 300-7219 / E-mail : zian1121@korea.kr

라. 문의처 : (044) 300-7313

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한다)에”를 “한다)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재계약”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재위탁은 한차례만 가능하며, 재위탁 계약기간”을 “재계약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, 재계약 기간”으로, “위탁을”을 “수탁을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지도·감독)”을 “(지도·감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

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사회복지시설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. 2. (생 략) 3. “재위탁”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 한다)가 -----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“재계약”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제11조(위탁 계약기간) ① (생 략) ② 재위탁은 한차례만 가능하며, 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.	제11조(위탁 계약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재계약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, 재계약 기간---------- 수탁을 ----------.
제16조(지도·감독) (생 략)	제16조(지도·감독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<신 설>	②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<신 설>	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